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0가단27110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최건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1. 8. 19.

판 결 선 고 2021. 10. 7.

주 문

1. 가. D(주민등록번호 1 생략)과 E(주민등록번호 2 생략)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1 기재 보험에 대하여 2017. 8. 31. 체결된 보험계약자 변경에 관한 계약을 4,119,23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4,119,23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D(주민등록번호 1 생략)과 E(주민등록번호 2 생략)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2 기재 보험에 대하여 2017. 8. 31. 체결된 보험계약자 변경에 관한 계약을 5,297,49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5,297,49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15. D에게 9,200만원을 대출만기일 2018. 4. 15., 약정이율 5.40%, 연체이율 196%로 정하여 대출해 주었다.

나. 그런데 D은 만기일까지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20. 10. 6. 현재 D에 대하여 위 대출원리금 116,967,414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 한편 D은 2014. 1. 20.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이하, 별지 목록 순번1 기재 보험을 ‘이 사건 제1 보험’이라고 하고, 별지 목록 순번2 기재 보험을 ‘이 사건 제2 보험’이라고 하며,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을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보험’이라고 한다)을 가입하였는데, 2017. 8. 31. 이 사건 각 보험의 계약자를 E으로 변경하였다가, 2017. 12. 27. 이 사건 제1 보험의 계약자는 자신의 자녀인 피고 B로, 이 사건 제2 보험의 계약자는 자신의 또 다른 자녀인 피고 C으로 변경하였다. 위 2017. 8. 31.자 계약자 변경일자 기준으로 이 사건 제1 보험이 해약될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은 4,119,238원이고, 이 사건 제2 보험이 해약될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은 5,297,496원이다(이하 ‘위 2017. 8. 31.자 계약자 변경’을 ‘이 사건 계약자 변경’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계약자 변경 당시 D은 총 1,087,134,305원 상당의 구리시 F아파트 G호 등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약 27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2020. 10. 6. 현재 D에 대하여 위 대출원리금 116,967,414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D의 무자력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자 변경 당시 D의 적극재산은 1,087,134,305원 상당이고, 소극재산으로는 약 27억원 상당으로,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자 변경 당시 D은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고, 이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채권은 보험계약의 해지 등 해약환급금지급사유가 발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권리이기는 하지만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적 권리이고,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의 해지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라고 볼 수 없고 또한 보험계약을 해지함에 특별한 제약이 없는 이상 채권자가 보험계약해지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데, 여기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인 D이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였던 점을 보태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보험에 관한 해약환급금채권도 사회통념상 구체적인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권리로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형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채무자인 D이 무자력 상태에서 E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보험의 계약자를 E으로 변경해 주기로 한 약정은,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던 D의 이 사건 각 보험에 관한 해약환급금채권이 E에게 이전되게 함으로써 그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D 또한 이 사건 각 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여 자신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D에게 사해의사가 있었고, D에게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전득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라. 취소의 범위 등에 관한 판단

따라서 이 사건 계약자 변경약정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보험의 명의변경 이후에 보험금을 계속하여 납입함으로써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의 해약환급금이 이 사건 계약자 변경약정 당시의 해약환급금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계약자 변경약정을 취소하여 그 계약자 명의를 D으로 회복할 것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이에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사해행위 당시의 해약환급금 중 순지급가능액을 한도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하기로 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계약자 변경약정은 이 사건 제1 보험의 경우 위 기초사실 다.항에서 본 해약환급금 4,119,238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제2 보험의 경우 역시 위 기초사실 다.항에서 본 해약환급금 5,297,496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하고, 원고에게, 피고 B는 4,119,238원, 피고 C은 5,297,49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승우

별지

목록

순번	증권번호	연세 보험증권번호	계약일	계약수령일	증권금액	상환액
1			2014. 1. 20.	2017. 8. 31.	4,119,239원	
2			2014. 1. 20.	2017. 8. 31.	5,297,495원	

